

# 中共·美國과 原子力協定 調印

美  
·  
中共

## 2國間查察은 不要

### 「訪問」으로 平和利用 担保

美國에너지省(DOE) 長官과 中共 副首相間에 美中共原子力協力協定이 7월23일 本調印되었는데, 앞으로 上下兩院 外交委員會에서 30일간의 회기중에 베악관과 협의를 하고, 그후 60일간의 회기중에 의회가 심의를 하게 된다. 이 協定은 두 핵무기국사이의 것으로서 2國間保障措置는 필요없다고 明記하는 한편 供給한 物質·施設에 대한 방문이나 核物質計量·管理情報의 교환을 정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美中共原子力協力協定을 의회에 송부할때 레이건대통령은 의회로 보내는 書簡에서 이 협정은 미국이 공산권과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이며, 對英佛(對英佛협정에 포함)에 이은 핵무기국과의 협정으로서 「1978年 核非擴散法」의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레이건대통령은 「중공과의 協議에 의해서 비핵무기국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중공의 정책이 미국이나 다른 原子力供給國의 핵비확산정책과整合性을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하여 中共의 핵비확산정책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음을 강조하였다.

美中共原子力協力協定의 本文은 협력의 범위나 방법을 정하는 부분과 이에 따르는 규칙을 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10條

이다. 협정에서 情報·技術移轉에 의한 협력분야로 제3조에서 原子爐와 核燃料加工分野에서의 연구·개발과 이용, RI이용, 핵연료사이클연구, 안전성연구·코드·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그외의 분야에서도 쌍방이 합의하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機微한 分野(농축, 재처리, 중수제조 등)에서의 협력에는 協定改定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核物質이나 시설·기기의 수출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상호 수출할 수 있는 핵물질은 연구용의 소량을 제외하고는 저농축우라늄으로 한정하였으며 또 제5조에서 수출된 시설, 기기, 핵물질이나 거기서 생산된 핵물질의 第3國移轉에는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 移轉된 물질의 20%이상으로의 농축이나 재처리, 형태·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兩國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양국이 신속히 協議하여 「6개월이내에 장기적 해결책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빨리 잠정적수단을 협의하여 상대국의 原子力計劃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조치한다고 하고 있다.

이 협정은 移轉된 核物質을 핵폭발장치의 연구·개발이나 기타의 군사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平和利用의 担保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이 협정이 핵무기국 사이의 것으로서 2國間保障措置는 필요없음을 인식한다고 하면서

도 物質·機材의 이동에 대해 신뢰, 예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창립하고 또 협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移轉된 핵물질, 시설, 기기 등에 대해 정보교환과 방문수속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작성한다고 하고 있다. 또 兩國은 공급된 핵물질의 國內計量·管理에 대해서 의견과 정보의 교환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정에서는 어느 한나라가 협정에 위반했을 때 다른 쪽이 그이후의 협력을 정지하는 권리 를 인정하며, 정지할 경우에는 양국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供給한 물질·기재의 返還請求權에 대한 암시를 남기고 있

다. 또 협정정지나 30년간의 기한종료후에도 移轉된 물질 등이 상대국내에 존재하는한 협정의 일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日·中共

## 平和利用 確保를 明記

### 原電의 輸出 등 協力を 期待

日中共原子力協力協定이 7月31日 第4回 日中共閣僚會議席上에서 일본 외상과 중공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의 사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일본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호주에 이은 여섯번째 2國間協定으로서

### 《日·中共 原子力協定의 骨字》

(1) 兩國政府는 양국간의 전문가, 정보의 교환, 핵물질 등의 공급 및 서어비스제공 등의 방법에 의해 협력한다.

(2) 협력분야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응용, 우라늄자원의 탐광 및 채굴, 경수로 및 중수로 설계·건설 및 운전, 原子爐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기타 양국정부에 의해 합의된 분야이다.

(3) 이 協定에 따르는 協力은 平和的目的에 한정한다. 이 협정에 대상이 되는 핵물질 등은 핵폭발장치의 개발 또는 제조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兩國政府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등에 관해 보장조치의 적용을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요청한다.

(4)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核物質 등을 제3국으로 移轉할때는 原供給國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5) 이 協定의 대상이 되는 核物質에 대해서는 附屬書에서 정하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가 취해진다.

(6) 兩國government는 이 협정에 따르는 협력의 진전 및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이 協定의 해석 또는 실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의를 한다. 그러나 이 협의 또는 다른 합의된 수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조정수속에 부탁할 수 있다.

(7) 앞에서의 (3), (4), (5) 규정에 대해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협의하여 이들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核物質 등이 양국의 管轄下에 있을 동안에는 앞에서의 (3)에서 (7)까지의 규정 및 정의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또 양국정부의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해서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다.

(9) 合意議事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축, 재처리, 중수제조의 기술, 풀루토늄 이전 등의 협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兩government間의 결정이 필요로 한다. 中共은 핵물질 등을 수령함에 있어서 IAEA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한다.

일본이 原子力機器 등에 대한 供給側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교섭을 추진한 최초의 것이다. 이 협정의 체결에 의해서 일본과 중공간의 원자력협력은 기본적인 형태가 확립 되게 되었으며, 原子力發電所의 수출 등 앞으로의 협력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 批准을 얻은후, 外交文書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협정은 日中共間의 原子力平和利用協力에 대해서 그 방법 및 분야를 규정하는 한편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보장조치 적용 등 兩國間의 협력이 平和利用面에 한정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協定은 10個條의 本文과 핵물질방호의 지침, 기재·자재의 용어정의 2個附屬書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중공의 IAEA보장조치협정체결과 농축, 재처리, 중수제조 등 機微한 技術協力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사이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合意議事錄이 작성되어 있다.

協力의 方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교환, 정보의 교환, 핵물질·자재 등의 공급, 서비스의 제공, 기타 양국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協力의 範圍에 대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이용, 우라늄자원의 탐광·채굴, 경수로 및 중수로의 설계·건설 및 운전, 원자로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기타 양국정부에서 합의하는 분야로 되어있다.

또 이 協定에 따르는 協力이 平和目的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IAEA의 보장조치를 핵무기 보유국인 中共側도 自主的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20%이상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핵물질 등의 형태·내용의 변경, 플루토늄 등의 저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核物質 등을 제3국으로 移轉할 경우

에만 供給國側의 사전동의를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교섭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平和目的利用, 第3國移轉, 핵물질방호조치의 규정에 대해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로서 위반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본측의 제의에 중공측도 이해를 표시하여 「즉시 협의하여 이들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明記되었다. 이들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核物質 등이 양국의 管轄下에 있을 동안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協定은 兩國의 国內法상 필요로 하는 수속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치하는 外交文書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5년간 유효한데 그 후 5년마다 자동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공은 지금까지 프랑스와 覺書, 소련(1955년 체결, 1959년 파기), 서독,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 영국,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IAEA의 보장조치를 받아들이는 규정에 대해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協定에도 정해져 있으며 협정위반시의 조치는 美中共協定과 같은 明記되었다.

### 이달의 到着資料

- ◆ Nuclear News(ANS) 8月號
- ◆ ANS News(ANS) 6月號, 7月號
- ◆ INFO(AIE) 8月號
-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NEI) 8月號
- ◆ Atoms in Japan(JAIF) 7月號
- ◆ 原子力産業新聞(日本原産) 1295號, 1296號, 1297號, 1278號
- ◆ 歐美放射性廢棄物安全管理觀察團報告書(日本原産) 1985年7月